

②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 (vat별도)

항 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및 사용시기
1. 정기안전점검비용	회	4	-	4,574,765	1. 향타 및 함발기 2. 높이가5미터이상인거푸집및동바리
2. 초기안전점검 비용	회	-	-	-	
계				4,574,765	발주자와 협의 하에 실정보고 후 추가 필요시 계상

안전점검비용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산출

구 분	회사	기술자	수량	엔지니어링단가	금액
향타 및 함발기	1차/2차	기술사	1	446,055	446,055
		초급기술자	1	213,496	426,992
높이가5미터이상인 거푸집및동바리	1차/2차	기술사	1	446,055	446,055
		초급기술자	1	213,496	426,992
소 계					1,746,094
직접경비	인건비의 10%				174,609
제 경 비	직접인건비 × 110%				1,920,703
기 술 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733,359
합 계					4,574,765

※ 별표1의 안전점검대가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대가는「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024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단위 : 원, 1인 1일 기준)

구분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술사	452,862	441,283	434,967	446,055	437,681	548,952	418,418
특급기술자	385,299	340,456	322,529	346,855	334,840	450,681	340,360
고급기술자	319,838	289,628	290,679	293,799	303,255	361,873	290,356
중급기술자	276,064	278,902	263,793	272,915	257,066	341,730	239,233
초급기술자	235,927	232,198	226,926	213,496	223,960	279,477	211,513
고급숙련기술자	273,579	275,155	243,388	252,328	248,354	334,945	267,012
중급숙련기술자	211,582	220,203	210,987	238,259	213,962	319,831	212,228
초급숙련기술자	192,737	188,567	181,810	194,029	187,715	207,282	174,216

- 상기 제시된 임금은 1일 평균임금 (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1개월 평균 근무일수(일))

- '22년부터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평균임금 미공표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별표1에 따름

** 기타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 해남(보고서 참조)